

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 안 이 유

연도중 보조내시된 국·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, 국·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법정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가.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3,91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,91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,379백만원이 증액된 230,110백만원, 특별회계는 534백만원이 증액되어 53,802백만원 임.

나. 세입예산은

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524백만원, 세외수입 △8,917백만원, 지방교부세 1,625백만원, 재정보전금 10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7,047백만원, 지방채 9,000백만원이며
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,886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△1,352백만원임.

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 정책사업비 8,530백만원(예비비 1,093백만원 포함), 재무활동 1,14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△291백만원이며,
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77백만원, 재무활동 46백만원, 행정운영경비 111백만원임.

관계법령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3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의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45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